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 5.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업재해지원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병해충 범위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어가에 대해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을 “강풍·이상고온(異常高溫)·이상저온(異常低溫)”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4조제4항에서”를 “법 제4조제5항에서”로 같은조에 제4항 중 “법 제4조제6항에서”를 “법 제4조제7항에서”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게 직접 대면, 전화, 문자, 마을방송,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이란 가뭄 · 홍수 · 호우(豪雨) · 해일 · 태풍 · <u>강풍 · 이상저온</u> (異常低溫) · 우박 · 서리 · 조수 (潮水) · 대설(大雪) 또는 한파 (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 ----- <u>강풍 · 이상고온(異常高溫) · 이상 저온(異常低溫)</u>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 · 관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 ----- ----- ----- ----- ----- ----- ----- ----- -----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7항----- ----- ----- ----- ----- ----- -----

<신 설>

제13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게 직접 대면, 전화, 문자, 마을방송,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한다.